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0
------	-----

제출년월일 : 1999년 월 일

제 출 자 : 평창군수

1. 개정이유

'99.12.2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주행세 및 자동차세일할계산신청, 주민세, 농지세 규정을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조항을 행정규제 완화 측면에서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창군세조례중 중복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함.

2. 주요골자

가. 주행세 신설(안제3조)

나.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정(안제9조)

다. 소득할 주민세 신고납부 개정(안제21조)

라.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및 부과지 신설(안제22조2의2)

마.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개정(안32조)

바. 자동차세 중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안제39조)

사. 주행세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납부, 특별징수의무자 등의 납입방법 등 신설(안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5)

아. 농지세 과세표준 및 세율 개정(안제46조)

자.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개정(안제60조)

차. 종합토지세 신고의무 삭제(안제79조)

카. 재산세 중 신고의무 삭제(안제9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관계부처승인 :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제4호 내지 제7호"를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행세

제9조 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6항중 "위원회 및 각분과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한다.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지방세 심의 위원회와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제2항중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를 "날까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항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에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중 "다음 각호의"를 "건축법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 이외의 자중 다음 각호의"로 하고,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8.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9.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9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1,000원 미만"을 "2,000원 미만"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절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 2 주행세

제40조의 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

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0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40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1.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 2.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사본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3
400만원초과	12만원+ 4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72만원+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20
4천만원초과	672만원+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1천872만원+ 8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40

제60조 제3항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균에 납입하여야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79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93조 제1항, 제3항,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세목)①~②(생략) 1.~3.(생략) (신설) 4.농지세 5.담배소비세 6.도축세 7.종합토지세 ③(생략)</p> <p>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세제이의신청분과 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 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p> <p>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 위원회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⑤(생략) ⑥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세목)①~②(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주행세 5.자동차세 6.농지세 7.도축세 8.종합토지세 ③(현행과 같음)</p> <p>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등)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③지방세 심의 위원회와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⑤(현행과 같음) ⑥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p>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신고납부) ①(생략)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액을 제외한다)을 다음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1.~2.(생략) 3.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 4. (생략) ③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 설)		제21조(신고납부)①(현행과 같음) ②..... 날까지 제2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1조(신고납부)①(현행과 같음) ②..... 날까지 제2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1조(신고납부)①(현행과 같음) ②..... 날까지 제2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 설)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 설)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행	개정안
<p>제32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때 3. 비과세 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때 4. 삭제 5. 삭제 6. 삭제 <p>7 ~ 9<신설></p> <p>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세액계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②(생략) ③<신설> 	<p>소득세 부과에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p> <p>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2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건축법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을 얻어야하는 자 이외의 자중 다음 각호의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현행과 같음> 7.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때 8.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9.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p>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②(현행과 같음)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현행	개정안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1,000원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2,000원미만.....</p> <p>제3절의2 주행세</p> <p>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p> <p>제40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p> <p>제40조의4(신고납부)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p> <p>1.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p> <p>2.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46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 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p> <table border="0"> <tr> <td>(과세표준)</td> <td>(세율)</td> </tr> <tr> <td>400만원이하</td> <td>과세표준액의 100분의3</td> </tr> <tr> <td>400만원초과</td> <td>12만원+ 400만원초과</td> </tr> <tr> <td>1,000만원이하</td> <td>금액의 100분의 16</td> </tr> <tr> <td>1,000만원초과</td> <td>108만원+ 1,000만원초과</td> </tr> <tr> <td>2,500만원이하</td> <td>금액의 100분의27</td> </tr> <tr> <td>2,500만원초과</td> <td>513만원+ 2,500만원초과</td> </tr> <tr> <td>5,000만원이하</td> <td>금액의 100분의 38</td> </tr> <tr> <td>5,000만원초과</td> <td>1,463만원+ 5,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0</td> </tr> </table> <p>제60조(신고납부 등) ①~②(생략)</p>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3	400만원초과	12만원+ 4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16	1,000만원초과	108만원+ 1,000만원초과	2,5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27	2,500만원초과	513만원+ 2,5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38	5,000만원초과	1,463만원+ 5,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0	<p>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 세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사본</p> <p>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 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 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 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 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군별로 안분한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 한까지 시(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6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 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p> <table border="0"> <tr> <td>(과세표준)</td> <td>(세율)</td> </tr> <tr> <td>400만원이하</td> <td>과세표준액의 100분의3</td> </tr> <tr> <td>400만원초과</td> <td>12만원+ 400만원초과</td> </tr> <tr> <td>1천만원이하</td> <td>금액의 100분의 10</td> </tr> <tr> <td>1천만원초과</td> <td>72만원+ 1천만원초과</td> </tr> <tr> <td>4천만원이하</td> <td>금액의 100분의20</td> </tr> <tr> <td>4천만원초과</td> <td>672만원+ 4천만원초과</td> </tr> <tr> <td>8천만원이하</td> <td>금액의 100분의 30</td> </tr> <tr> <td>8천만원초과</td> <td>1천872만원+ 8천만원초 과 금액의 100분의 40</td> </tr> </table> <p>제60조(신고납부 등) ①~②(현행과 같음)</p>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3	400만원초과	12만원+ 4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72만원+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20	4천만원초과	672만원+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초과	1천872만원+ 8천만원초 과 금액의 100분의 40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3																																				
400만원초과	12만원+ 4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16																																				
1,000만원초과	108만원+ 1,000만원초과																																				
2,5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27																																				
2,500만원초과	513만원+ 2,5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38																																				
5,000만원초과	1,463만원+ 5,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0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3																																				
400만원초과	12만원+ 4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72만원+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20																																				
4천만원초과	672만원+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초과	1천872만원+ 8천만원초 과 금액의 100분의 40																																				

현행	개정안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후단신설></p> <p>제79조(신고의무) ①~⑥<생략></p> <p>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때</p> <p>2~3호 <삭제></p> <p>⑧ <생략></p> <p>제93조(신고의무) ①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p> <p>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때</p> <p>3. 비과세 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때</p> <p>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 건축물이 되었을때</p> <p>5. 건축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 하였을때</p>	<p>③.....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p> <p>제79조(신고의무) ①~②(현행과 같음)</p> <p>⑦ <삭제></p> <p>1. <삭제></p> <p>⑧ (현행과 같음)</p> <p>제93조(신고의무) ① <삭제 ></p> <p>1 ~ 6 <삭제></p>

현행	개정안
<p>6. 건축물을 양도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p> <p>②<생략></p> <p>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p> <p>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 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②<현행과 같음></p> <p>③<삭제></p> <p>④<삭제></p>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세법

제53조 【지방세의 세목】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7의2 주행세

제203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5의2 주행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때

제192조 【신고의무】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196조의16 【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196조의17 【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231조의21 【신고의무】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 10일 이내의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4조의 9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종중토지로서 공부등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⑥ 수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으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5조의 2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건축허가

1. 도시계획구역내, 준도시지역내, 국도경계 50M 이내, 고속도로 경계 100M이내
2. 위 지역 이외지역(기타지역)
 - ① 200m² 이상이거나, 3층 이상 지역
3. 건축허가중 건축법9조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함으로써 허가에 갈음

건축신고

1. 바닥면적 합계 85m²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2. 준도시지역 안에서 연면적 100m² 이하인것
3.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로서
 -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하인 주택
 - 연면적이 200m² 이하인 창고
 - 연면적이 400m² 이하인 축사
 - 연면적이 400m² 이하인 작물 재배사
4.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이하인 건축물
 - 높이 3M 이하의 증축
 - 공업지역, 산업단지 및 준도시지역내 산업촉진지구 안에서 2층 이하이고 500m² 이하인 공장
 - 표준설계 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단독주택, 농·축산업용 건물